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 목 차 >>

1. 보험용어 해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4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5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8조【해지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연금개시 이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table>
<tr><td colspan="3">연금지급형태</td></tr>
<tr><td rowspan="2">종신연금형</td><td rowspan="2">보증기간부
(보증지급기간:10년/20년)</td><td>정액형</td></tr>
<tr><td>체증형(5%/10%, 10년간 체증)</td></tr>
<tr><td colspan="2">보증금액부</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확정연금형(10년/15년/20년)</td><td>정액형</td></tr>
<tr><td>체증형(5%/10%, 10년간 체증)</td></tr>
<tr><td colspan="3">상속연금형</td></tr>
</table>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고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입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5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전환일시금)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하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에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참조)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생존연금 및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8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생존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생존연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될 때에는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적립액의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 생존연금(제6조)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 연금지급형태 >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금액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단,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연금지급형태 >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상속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과 확정연금형에서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생존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의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그 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8.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라 함은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 특약으로 납입(전환)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적 립 기 간</th><th>지 급 이 자</th></tr>
<tr><td rowspan="4">생존연금
(제6조)</td><td>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td><td>생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존연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 rowspan="2">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td><td>생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생존연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 colspan="2">생존연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생존연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5%</td></tr>
<tr><td colspan="2" rowspan="3">해지환급금
(제8조 제1항)</td><td>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td></tr>
<tr><td>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5%</td></tr>
</table>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